

	AU학기(계절학기및 AU+(플러스)학기)운영규정	규정번호	3-4-6
		제정일자	1997.03.01.
		개정일자	2026.03.01.
		개정차수	10차
		소관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학칙 제1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41조에 의거 계절학기 및 AU+(플러스)학기(이하 “AU학기”라 한다.)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AU학기란 학생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운영되는 학기를 의미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계절학기: 학습보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기
2. AU+(플러스)학기: 자기주도적 학습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다학기제

[본조신설 2026.03.01.]

제3조(수강대상) 수강대상자는 대학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미취득 과목이 있는 자
2.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한 미수강 교과목 수강 희망 자
3. 방학중 현장실습 신청자
4. AU+(플러스)학기 신청자 <신설 2024.12.01.>
5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4조(개설기준) ① AU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개설한다. 다만, AU+(플러스)학기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기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수업은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.

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AU학기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26.03.01.>

④ 강의개설은 동일과목의 수강신청자가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과목의 특성상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.

⑤ 방학중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운영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수강신청) ① AU학기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학과에 수강신청을 하며, 학과에서는 지도교수 확인 후 수강신청서를 제출한다.

② AU학기의 수강신청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.

③ 방학중 현장실습을 수강하는 학생은 계절학기 일반수업을 중복 수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신청할 수 있다.

제6조(수강등록) ① AU학기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학점에 따라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이 규정 제3조제3호에 해당되는 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는다.

제7조(성적평가) ①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

② AU학기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, 제3조제1호에 대한 성적은 최고 B+까지 인정한다.

③ AU학기에서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은 당해 학년도의 정규학기(1, 2학기) 성적 평점평균 계산에는 합산하지 아니한다.

④ AU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장학금 지급시 반영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강사료)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개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) 제3조 제1항에 대하여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